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 심사경과

1. 심사일정

가. 제 안 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94. 11. 22

다. 상정일자 : 94. 12. 22

라. 의결일자 : 94. 12. 22

2. 제안설명 요지

가. 설 명 자 : 건설국장

나. 내 용

- 94. 10. 1부터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금까지 위탁계약에 의하여 관리하여 오던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수도과와 위탁협의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하수도사용료 연체금조항(연리 9.6%)을 현실에 맞게 가산금조항(5%)으로 개정하는 사안임.

3. 질의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하수도사용료 연체료의 현재와 개정안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 • 연체료가 조정되면 시민들의 가계부담이 되며, 고질채납자의 발생이 우려가 되지 않는가?	• 현행은 연리 9.6%로 매달 0.8%씩 가산되며 개정안은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한번에 한하여 0.5%가 가산됨. • 한 세대당 하수도료는 3,000원선으로 연체료는 150원 정도며 고질채납자가 발생할 우려에 대하여는 상수도과 같이 고지가 되기 때문에 3개월을 안 내면 단수조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임.

4. 찬반토론 : 없 음

5. 소수의견 : 없 음

□ 심사결과 : 원안의결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9
의결 년월일	94. 12. 29 (제33회)

제출년월일 : 1994. 11. 21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94. 10. 1부터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금까지 통합공과금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관리하여 오던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수도과와 협의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 하수도사용료 연체금조항(연리 9.6%)을 현실에 맞게 가산금조항(5%)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였던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사용료에 포함하여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함(안 제19조 제1항, 제19조 제2항)
- 나. 하수도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삭제에 의한 연체금조항(연리9.6%)을 가산금조항(5%)으로 개정함. (안 제22조 제1항, 제22조 제2항)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를 “상수도사용료고지서에 병기 고지하여 동시 징수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중 “통합고지서에”를 “상수도사용료고지서에”로 하고 “연체채납명부에”를 “채납명부에”로 한다.

제22조중 “(연체금)”을 “(가산금)”으로 하며 동조 제1항중 “연리 9.6퍼센트의 연체금”을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으로 하여 본문으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마감일은 20일, 말일, 익월 10일로 하여 <u>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u>	제19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u>상수도</u> <u>사용료고지서에 병기 고지하여</u> 동시 징수한다.	제19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u>상수도</u> <u>사용료고지서에 병기 고지하여</u> 동시 징수한다.	제19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u>상수도</u> <u>사용료고지서에 병기 고지하여</u> 동시 징수한다.	제19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u>상수도</u> <u>사용료고지서에 병기 고지하여</u> 동시 징수한다.
② <u>통합공과금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채납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하여야 한다.</u>	② <u>상수도사용료고지서에</u> <u>채납명부에</u>	② <u>상수도사용료고지서에</u> <u>채납명부에</u>	② <u>상수도사용료고지서에</u> <u>채납명부에</u>	② <u>상수도사용료고지서에</u> <u>채납명부에</u>
제22조(<u>연체금</u>) ① 구청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u>연리 9.6퍼센트의 연체금</u> 을 당해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22조(<u>가산금</u>) <u>100분의 5에 상당하는</u> <u>가산금을</u>	제22조(<u>가산금</u>) <u>100분의 5에 상당하는</u> <u>가산금을</u>	제22조(<u>가산금</u>) <u>100분의 5에 상당하는</u> <u>가산금을</u>	제22조(<u>가산금</u>) <u>100분의 5에 상당하는</u> <u>가산금을</u>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연체기간이 1개월미만인 때에는 1개월로 산정한다.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연체기간이 1개월미만인 때에는 1개월로 산정한다.	(삭제)	(삭제)